

선	기관의 장
람	



제 572 호

2004년 5월 7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9호(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30호(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5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31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 17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제613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20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17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 2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66호(2004년도계량기정기검사실시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93호(공시송달) 2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94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논현2지구22차))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99호((긴급)물품입찰공고(절전형제어기)<2004년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절전형제어기제조구매>)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0호(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2호((긴급)변경입찰공고(전자입찰))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3호(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4호(불용물품(컴퓨터)매각재입찰(긴급)공고)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7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5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308호((긴급)공사입찰공고<2004년도남동공단가로등정비공사>) 62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9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목적사업)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이 유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목적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공단위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추가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

□ 주 요 골 자

-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으로 신설 (제23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30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또는 “강당”이라 함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 소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시설이용 신청 또는 허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이외에 예식, 공연, 집회, 기타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부대기실, 폐백실
2. 접수대
3. 드레스 및 폐백복
4. 축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한다.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하는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구청 산하 전직원 및 직계가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예식(대강당에 한함)
2.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3.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4.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③ 동조 제2항제1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그 외 각 호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의한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⑤ 동조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단, 예식을 위한 대강당 사용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11: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급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 조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
 2.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행사
-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대상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보훈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3. 등록장애인(장애인증명서)
4. 저소득구민의 합동결혼식(추천서)
5. 구청 산하직원 및 현직 의원의 직계가족(재직확인)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강당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구청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명령(별지 제6호)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타법령과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예식 사용 신청서

○ 접수번호 :

신 랑	성 명		혼주및 혼주와의관계	의 () 남
	주 소	()		
신 부	성 명		혼주및 혼주와의관계	의 () 여
	주 소	()		
예약일시	년 월 일 시			
비품사용 여 부	1. 드레스(본인준비, 구청제공) 2. 폐백복(본인준비, 구청제공) 3. 기 타()			
사용료	금 (₩)			

위와 같이 남동구청 대강당(예식)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등록확인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강당(시설물)사용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설		☐ 대강당 ☐ 소강당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설비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기타 ()			
	사용자설비				
사 용 료		금 (₩)			
비 고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내용		☐ 예식 ☐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허가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 대강당 ☐ 소강당			
	부속설비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기타 ()			
		사용자설비			
사 용 료		대관료	₩		
허가조건		1.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에 응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제5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연 락 처	☎
취소사유 및 내역	취소사유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 대강당(예식,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 소강당(발표회, 세미나, 설명회, 교육, 기념식)		
납부한 사용료		₩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에 대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명령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연 락 처	☎
사유 및 내역	취소사유	동조례 제11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 대강당(예식,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 소강당(발표회, 세미나, 설명회, 교육, 기념식)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표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구분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대강당	예식	1회 11:00~12:00 2회 13:00~14:00 3회 15:00~16:00	90,000	1회	※피로연 장소 별도계약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기념행사	09:00~21:00	80,000	1시간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간 별도 - 사용료의 50% ▷18:00이후 사용시간 20%가산
	강연회 설명회 토론회 교 육	09:00~18:00	80,000	1시간	
소강당	기념행사 발표회 창작활동	09:00~21:00	50,000	1시간	▷18:00이후 사용시간 20%가산
	세미나 토론회	09:00~18:00	50,000	1시간	

※ 대관료에는 전기료 및 냉·난방비 포함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당 일할 계산

□ 제안이유

-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예식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2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 예식이외에도 문화 예술 및 각종 행사의 대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태에 맞도록 폭 넓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 주요내용

- 시설물의 명칭 변경 (제2조)
 - 기본시설인 대회의실을 “대강당”으로 중회의실을 “소강당”으로 함
- 사용자의 자격 :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로 함 (제4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 및 제7조)
 -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용
- 다른(이전) 조례의 폐지 (부칙 제3항)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예식장운영관리조례”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31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시행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37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가격”을 각각 “가액”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 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2004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제8조 제2항)
-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매년 부과 고지하는 정기분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제3항)
-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제50조)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5월 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13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관수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의거 그 직무대행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제3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 인 관 수 자

기 관 별	공 인 종 류 별	관 수 자
본 청	·구청장직인 및 계인 ·민원전용 구청장직인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직인 ·기타공인	민원지적과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당해업무담당주사 당해업무담당주사
·직속기관	·당해 기관장직인 및 계인 ·기타공인	사무업무담당주사 당해업무담당주사
동	·동장직인 및 계인 ·동장전용 구청장직인 ·기타공인	동장이지정하는자 동장이지정하는자 당해업무담당

□ 개정이유

공인의 관수자 지정 등 공인관수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인관수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인관수업무에 철저를 기함.

□ 주요골자

- 공인관수자 지정규정을 명확히 함(제2조 관련 별표)
- 지정된 공인관수자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관수자 지정사항 신설(제2조제2항 신설)
- 현장민원실 폐지로 삭제 (제3조 제2항 삭제)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4-17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4. 5. 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 102,365.9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전재만)

신동아 건설주식회사 (대표자 : 김진천)

○ 주소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2 한풍상가

4. 사업시행기간 : 2004. 5 ~ 2006. 12

5. 건축계획에 관한사항(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지면적(㎡)	21,853.64	-	변경없음
건축면적(㎡)	5,240.47	5,029.14	▽ 211.33
연 면 적(㎡)	105,113.69	102,365.99	▽ 2,747.70
건 폐 율(%)	22.67	22.21	▽ 0.46
용 적 율(%)	358.44	355.15	▽ 3.29
주차대수(대)	792	793	▲ 1
세 대 수	677	715	▲ 38
변경사항	아파트 평형(세대수)조정으로 인한 건축계획변경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4-266호

2004년도 계량기정기검사실시공고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계량기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4. 4.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대상자(계량기) : 다음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
판수동저울(30톤이하),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30톤이하), 분동, 추,
2. 검사기간 : 2004. 5. 24~ 7. 2 (검사시간 : 매일 10: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3.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검사일자	대상지역	검사장소
2004.5.24	만수1, 6동	만수1동사무소	2004.6.07	구월1동	구월1동사무소
2004.5.25	만수2동	만수2동사무소	2004.6.08	구월2동	구월2동사무소
2004.5.27	만수3동	만수3동사무소	2004.6.09	구월3동	구월3동사무소
2004.5.28	만수4동	만수4동사무소	2004.6.10	구월4동	구월4동사무소
2004.5.31	만수5동	만수5동사무소	2004.6.11	남촌도림동	남촌도림동사무소
2004.6.01	간석1동	간석1동사무소	2004.6.12	논현고잔동	소래수협공판장앞
2004.6.02	간석2동	간석2동사무소	2004.6.14	장수서창동	장수서창동사무소
2004.6.03	간석3동	간석3동사무소	2004.6.15~	시장5,상가15,백화	현지출장검사
2004.6.04	간석4동	간석4동사무소	2004.7.02	점3,대형점2	

4. 소재장소검사 및 검사의 연기신청

가. 소재장소검사 :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장소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소재장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의 연기신청 : 검사기간내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 타

가. 우천시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나. 검사기간중에는 검사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작검정 또는 수리검정 유효기간이 2004년도에 속한 계량기도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부정계량기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계량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293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웅기 외4건, 김병기외 11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종합·양도소득할 주민세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4년 2월-2004년 4월 소득할 주민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이사감”, “우편물 장기방치”, “주소불명”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4. 05.21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
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llegible]

04.02월 소득할 주민세 독촉장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김병기		남동 만수	104004-0402 -581-1	784,360	수취인 부재
2	김근석		남동 간석	104005-0402 -530-15	16,670	이사감
3	장옥환		남동 간석	540-5	1,503,410	수취인 부재
4	임채옥		남동 간석	540-7	4,685,060	수취인 부재
5	이화영		남동 간석	550-4	15,660	수취인 미거주
6	김용수		남동	550-8	29,170	수취인 미거주
7	양태선		남동 만수	570-8	345,660	수취인 부재
8	감청자		남동 만수	582-5	8,880	수취인 미거주
9	서준택		남동 만수	582-7	683,710	수취인 부재
10	변은자		남동 서창	650-2	22,130	이사감
11	소옥영		남동 논현	670-6	4,120	수취인 미거주
12	강윤식		남동 고잔	670-12	13,730	수취인 미거주
		이	하	여	백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294 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자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5. 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논현2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기업자) :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2,543,054.9㎡
사업기간 2000. 3. 31 ~ 2006. 12. 31
5. 열람기간 : 2004. 5. 3 ~ 2004. 5. 17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2662)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 내역 : “별첨” (기업자제시액조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453-2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탁상 대상물건 및 기업지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1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지번(상초지번)	소유지	물건명	구조	평가기준별 평가액			기업지제시액			소유지 비율			권리구분	관계인	주 소
					지번	면적	단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소유	지소			
2008 - 1	지번(상초지번) 논현동 233-6		금포정(1층) 철근콘크리트		552.00	㎡	315,744,000	323,472,000	579,000	319,508,000	강제정	405-5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3-10	405-130 인천 연수구 동원동 820-1 16/1 대우3차아파트 101-306	권리구분	관계인	주 소
																인천 남동구 연수동 1014-1
																인천 남동구 연수동 1008 남동구청
2008 - 2			금포정(2층) 철근콘크리트		552.00	㎡	315,744,000	323,472,000	579,000	319,508,000						
2008 - 3			기차(1층) 철관		61.00	㎡	3,965,000	3,660,000	62,500	3,812,500						
2008 - 4			기차(2층) 철관		61.00	㎡	3,965,000	3,660,000	62,500	3,812,500						
2008 - 5			금포정(3층) 철근콘크리트		100.00	㎡	27,800,000	29,300,000	265,500	28,550,000						
2008 - 6			금포정(지하) 철근콘크리트		83.44	㎡	22,028,160	22,195,040	265,000	22,111,600						
2008 - 7			숙소 목조스레트		23.00	㎡	2,530,000	2,760,000	115,000	2,645,000						
2008 - 8			사무실 콘테이너박스		18.00	㎡	250,000	250,000	0	250,000						
2008 - 9			비덕1 콘크리트		1400.00	㎡	14,000,000	15,400,000	10,500	14,700,000						
2008 - 10			비덕2 콘크리트		1470.00	㎡	14,700,000	16,170,000	10,500	15,435,000						
2008 - 11			비덕3 콘크리트		345.00	㎡	3,450,000	3,795,000	10,500	3,822,500						
2008 - 12			비덕4 콘크리트		119.28	㎡	1,192,800	1,312,080	10,500	1,252,44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지역 조서

사업지구: 인천도복(2)
(금액: 원)페이지: 2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영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지분	평가(관별 평가)액 동아	대일예석 3,113,440	면적	기업지 제시액 금액	소유자 이름 주소 (상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2008 - 13	논현동	반곡5 콘크리트	283.04㎡	2,830,400		10,500	2,971,920 김재영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3-10		
2008 - 14		반곡6 콘크리트	78.30㎡	783,000	861,300	10,500	822,150	405-130 인천 연수구 동산동 920-1 16/1 대우3차아파트 101-306		
2008 - 15		지단 황제	1.00식	700,000	700,000	0	700,000			
2008 - 16		조경시설	1.00식	900,000	950,000	0	925,000			
2008 - 17		주식장대용 황제	1.00식	0	0	0	0			
2008 - 18		당면동	11.50㎡	402,500	379,500	34,000	391,000			
2008 - 19		현관 앞부대농사지	13.75㎡	2,475,000	2,337,500	175,000	2,406,250			
2008 - 20		현동구 앞부대농사지	5.64㎡	1,100,000	1,100,000	0	1,100,000			
534 - 0	논현동 283-6	(유양) 소래골프랜드	1.00식	471,300,000	478,700,000	0	475,000,000	405-847 인천 남동구 논현동 283-8		
534 - 1		골베르데인 제우터크	1.00식	↑	↑	↑	↑	405-130 인천 연수구 동산동 920-1 16/1 대우3차아파트 101-306		
534 - 2		캐디가 콘서트(주)	37.00대	↑	↑	↑	↑			
534 - 3		타석리B 유니코ENG	17.00개	↑	↑	↑	↑			
534 - 4		타석메트	37.00개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지역 조서

시정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페이지: 3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영조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지분	평가기관별 평가	기업자제지역 평가	금액	소유지이름 소유지주소 (실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주소
534-5	논현동 263-6	세종이	37.00 개	↑	↑	↑	강계영 405-847 인천 남동구 논현동263-8 406-1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16/1 대우3차아파트 101-306		
534-6		경동보일러 100810090	1.00 대	↑	↑	↑			
534-7		대형냉면용기 상영SH4516	1.00 대	↑	↑	↑			
534-8		대형열회전 유닛RH16	1.00 대	↑	↑	↑			
534-9		장수기 호호나이스	1.00 대	↑	↑	↑			
534-10		냉면수기 오웰	3.00 대	↑	↑	↑			
534-11		냉면	1.00 대	↑	↑	↑			
534-12		부탄가스냉면	4.00 대	↑	↑	↑			
534-13		모기퇴치기	6.00 개	↑	↑	↑			
534-14		벽걸이냉면기	20.00 대	↑	↑	↑			
534-15		저외선소독기 선경	1.00 개	↑	↑	↑			
534-16		그물망	1.00 석	↑	↑	↑			
534-17		확기 12인용	347.00 개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지역 조서

사업지구: 인천노련(2)
(금북: 원)페이지: 4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양지번)	물건명, 구조	수입	평가기관별 평가액			기업자제지역			소유자 이름			관리구분	관 계 인	주 소
534 - 18	노련동 203-6	인조노리	1.00 석	↑	대입액	↑	↑	↑	↑	↑	↑	↑	↑	↑	↑
405-847 인천 남동구 노련동203-6 406-130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16/1 대우3차아파트 101-306															
534 - 19		관악이	3.00 석	↑	↑	↑	↑	↑	↑	↑	↑	↑	↑	↑	↑
534 - 20		골포동	4000.00 개	↑	↑	↑	↑	↑	↑	↑	↑	↑	↑	↑	↑
534 - 21		대형가옥	7.00 개	↑	↑	↑	↑	↑	↑	↑	↑	↑	↑	↑	↑
534 - 22		정화조	1.00 석	↑	↑	↑	↑	↑	↑	↑	↑	↑	↑	↑	↑
534 - 23		사무실기, 의자류	2.50 대	↑	↑	↑	↑	↑	↑	↑	↑	↑	↑	↑	↑
1,219,723,880 원															
【소계】															
106 - 0	노련동 414-1	(유형) 노련골포정	1.00 석	367,000,000	374,000,000	0	370,500,000	조광석	405-848 인천 남동구 노련동 414-1 (2/3)						
106 - 1		골포연승정월암 2262-00-36	13.00 석	↑	↑	↑	↑	↑							
2		황남그늘암	1.00 석	↑	↑	↑	↑	↑							
106 - 3		홍이송시스템	1.00 석	↑	↑	↑	↑	↑							
106 - 4		단석배정시스템 32타석	1.00 석	↑	↑	↑	↑	↑							
106 - 5		보일리시원 연수중급시원포 관	1.00 석	↑	↑	↑	↑	↑							
106 - 7		단석투브하터 황지거치대포 관	2.00 석	↑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시액 조서

시정지구: 인천논현(2)
(2차: 필)페이지: 5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영초지번)	물건명, 구조 채타기	수량 지번	평가관련평가액			기업자제시액			소유자 이름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권리구분	관계인 주소
				평가	대입액	평가	평가	금액	조정액			
106 - 8	논현동 414-1		46.00 개	↑	↑	↑	↑	↑	↑	405-0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106 - 10		강제석	1.00 석	↑	↑	↑	↑	↑	↑			
106 - 11		조경석	40.00 개	↑	↑	↑	↑	↑	↑			
106 - 12		간판(중등)	1.00 석	↑	↑	↑	↑	↑	↑			
106 - 13		커시판 1.5*2.4	1.00 석	↑	↑	↑	↑	↑	↑			
106 - 14		민물 1*1*16	6.00 석	↑	↑	↑	↑	↑	↑			
106 - 15		그늘막 4*4*3	1.00 석	↑	↑	↑	↑	↑	↑			
106 - 16		불이승리인 40m*40m	1.00 석	↑	↑	↑	↑	↑	↑			
106 - 17		반커연승장	1.00 석	↑	↑	↑	↑	↑	↑			
106 - 18		기름양구	1.00 개	↑	↑	↑	↑	↑	↑			
106 - 19		옥상불구하임지시설비 34m 아시버림	1.00 석	↑	↑	↑	↑	↑	↑			
106 - 20		옥상불구지시설 2*4*1.5m	1.00 석	↑	↑	↑	↑	↑	↑			
106 - 21		옥상비탈중안조인디 23*10m	1.00 석	↑	↑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지체지역 조서

시업지구: 인천노원(2)
(금액: 원)페이지: 6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상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연월평가액 기준	평가액	기업지체지역 금액	소유지이름 소유지주소 (상지주지)	권리구분	관계인주소
106 - 22	노원동 414-1	이강조영배치(아파트)	12.00 개	↑	↑	↑	조영석 405-848 인천 남동구 노원동 414-1 (2/3)		
106 - 23		수도호수시설 300㎡	1.00 식	↑	↑	↑			
106 - 24		골프채로이 밭마늘	32.00 개	↑	↑	↑			
106 - 25		인조잔디(아프로치) 20×40㎡	1.00 식	↑	↑	↑			
106 - 26		북도교우메트 1.2×40㎡	2.00 식	↑	↑	↑			
106 - 27		경의지 목조	23.00 개	↑	↑	↑			
106 - 28		차판기	3.00 대	↑	↑	↑			
106 - 29		탄석면화반 프레스틱주원제	32.00 개	↑	↑	↑			
106 - 30		탄석메트(교구) 1.2×1.2㎡	40.00 개	↑	↑	↑			
106 - 31		탄석제물이 앞마늘	20.00 개	↑	↑	↑			
106 - 32		신발장 목재	1.00 개	↑	↑	↑			
106 - 33		본실물보관용 목재	1.00 개	↑	↑	↑			
106 - 34		시물함	26.00 개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지세시액 조서

시유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7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입		평가기관별 평가액		기업지세시액		소유자이름		권리구분	
				지분	면적	평가액	평가액	단가	금액	조경식	소유자주소 (별거주지)	권리구분	평가액
106-35	논현동 414-1	대형거주용		4.00 개	1	1	1	1	1	1	405-040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관 계 인	주 소
106-36		화분		1.00 식	1	1	1	1	1	1			
106-37		소파		4.00 식	1	1	1	1	1	1			
106-38		일식시계		2.00 개	1	1	1	1	1	1			
106-39		TV		3.00 대	1	1	1	1	1	1			
106-40		캐논타입비 2-1 (7/10크리 트)		1.00 식	1	1	1	1	1	1			
106-41		컴퓨터책대		1.00 식	1	1	1	1	1	1			
106-42		전화기		3.00 대	1	1	1	1	1	1			
106-43		신용카드조화기		2.00 대	1	1	1	1	1	1			
106-44		인터폰		3.00 대	1	1	1	1	1	1			
106-45		수제금고		1.00 개	1	1	1	1	1	1			
106-46		냉온수기		3.00 대	1	1	1	1	1	1			
106-47		에어컨		3.00 식	1	1	1	1	1	1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자제지역 조서

시업지구: 인천논현(2)
(근화, 원)페이지: 8 of 9
작성일: 2004.03.24

순번	소재지 지번(상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지번	평가기관별 평가액 동아	기업자제지역 대일예셋	민기	금역	조형식	소유자 이름 (상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106-48	노원동 414-1	소파타(플 목재, 유리)	4.00 개	↑	↑	↑	↑	↑	405-846 인천 남동구 노원동 414-1 (2/3)		
106-49		라커용보관함	1.00 식	↑	↑	↑	↑	↑			
106-50		세면기	1.00 식	↑	↑	↑	↑	↑			
106-51		캐비넷	1.00 개	↑	↑	↑	↑	↑			
106-52		냉온풍기(입형)	2.00 대	↑	↑	↑	↑	↑			
106-53		냉장고	3.00 대	↑	↑	↑	↑	↑			
106-54		세탁기	1.00 대	↑	↑	↑	↑	↑			
106-55		순간온수기	1.00 대	↑	↑	↑	↑	↑			
106-56		책장 목재	1.00 개	↑	↑	↑	↑	↑			
106-57		웃걸이 목재	2.00 개	↑	↑	↑	↑	↑			
106-58		창고전열대 5.8*0.7m	2.00 식	↑	↑	↑	↑	↑			
106-59		의자	5.00 개	↑	↑	↑	↑	↑			
106-60		영문식(책) 50박스	1.00 박	↑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기업지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노원(2)

페이지: 9 of 9
작성일: 2004.03.24

(금액: 원)

순번	소재지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간별 평가액	기업지제시액	소유자 이름	권리구분	관계인 이름		
106 - 61	지번(당초지번)	타이틀		지번	동아	대입액	단가	금액	조경식	소유자 주소 (실거주지)	관계인 주소
44-1				2.00 개	↑	↑	↑	↑	↑	405-448 인천 남동구 노원동 44-1 (2/3)	
106 - 62		유치용		20.00 개	↑	↑	↑	↑	↑		
106 - 63		대형석유보로		1.00 개	↑	↑	↑	↑	↑		
106 - 64		선공기		38.00 대	↑	↑	↑	↑	↑		
106 - 65		플바구니		36.00 개	↑	↑	↑	↑	↑		
106 - 66		타이브라셔		40.00 개	↑	↑	↑	↑	↑		
106 - 67		보관서고정인		40.00 개	↑	↑	↑	↑	↑		
106 - 68		한국물비품 5톤트럭(골프채 보관용)		5.00 차	↑	↑	↑	↑	↑		
106 - 69		영양중전차 15kw, 5kw		1.00 식	↑	↑	↑	↑	↑		
106 - 70		골프장 5톤트럭		1.00 차	↑	↑	↑	↑	↑		
[소계]				370,500,000 원							
[총계]				1,590,223,860 원				소유자수: 2 명 관계인수: 2 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299호

(긴급)물품입찰공고(절전형제어기)**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04년 부적합가로등 정비공사 절전형 제어기 제조 구매
- 규격 및 수량
 - 절전형 제어기 (ML1205+수신기) : 1대
 - 절전형 제어기 (ML1215+수신기) : 14대
- 기초금액 : 46,695,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입찰방법 : G2B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4년 5월4일(화)오전09:00~5월7일(금)오후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5월 7일(금) 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건설과 토목팀 황정호 (☎032-453-2556)
 -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제작조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둔 업체이며
- 가로등절전형 제어기 실용신안등록 업체중 가로등 전력요금 10%이상 절감, 17%이상 고조파 절감, 역율 97%이상 개선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 절전형제어기는 전력품질개선장치, 역율보상용 콘덴서, 가로등수신기 자동 복구형 누전 차단기를 일체형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누전발생시 0.3초 이내 동작 누전상태 해소 시 3초이내 복구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 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 간주.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46,695,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규격서,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
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
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5 월 3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정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300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3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법규명

(1)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 참여주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3. 주요내용

- 불법광고물의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안 제10조제1항)
- 불법광고물의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안 제10조제2항)
- 위 내용을 본문으로 하는 제10조를 신설

4. 의견제출

위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5월23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56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기간 : 2004. 5.3 ~ 2004. 5. 23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개정조례 (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사유

-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 참여주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

☐ 주요내용

- 불법광고물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안 제10조제1항)
- 불법광고물의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안 제10조제2항)
- 위 내용을 본문으로 하는 제10조를 신설

☐ 본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11조로, 제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13조로, 제13조를 14조로, 제14조를 15조로, 제15조를 16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4조 각항에 규정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신 설>	제10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 14조 각항에 규정된 현수막 이외의 현 수막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1과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 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 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①구청장은 ----- -----, 징수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①~②(현행과 같음)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①구청장은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준용한다. ④구청장은-----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아니할 수 있다.	제12조①~⑥(현행과 같음)
제12조①구청장은-----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고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할 수 있다. ④교육의-----연장할 수 있다.	제13조①~⑦(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⑤교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교육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①법 제17조----- 아니한다.	제14조(수수료)①~④(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면제할 수있다.	
④영 제12조의-----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6조-----별표5와 같다.	제15조(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②(현행과 같음)
②과태료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영 제47조-----별표6과 같다.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①~②(현행과 같음)
②이행강제금의-----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302호

긴급변경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공 사 명 : 남동공단47B/3L외 13개소 하수도 비굴착 정비공사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기초금액 : 95,161,000원(부가세포함)
- 공사개요
 - 하수관비굴착보수D=450 : 39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600 : 21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700 : 10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800 : 12개소
 - 하수관비굴착보수D=800 이하 연결관 절단 N=26개소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4.05.04(화)09:00 ~ 05.08(토)13:00
- 전자입찰 집행일시 및 장소 : 2004.05. 10(월) 1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등록기간중 설계서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하수팀 : 032- 453-2582)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상하수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신기술지정업체 또는 협약을 맺은 기술보유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2004.05.08 13:00)까지 관련서류를제출 (제출처 : 남동구청 건설과 032- 453-2542)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개찰)집행 처리되며, 제출하지 않은 투찰업체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결정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95점이상)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87.754%)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중 최저가 입찰순으로 우리구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지정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제출(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중 제5조(제출서류등)에 의한 서류

7. 수행능력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중 [시공실적순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방법(추정 가격 전문공사 2억원미만)] 의 방법

8. 기타사항

- 본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WWW.g2b.go.kr)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입찰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54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0 0 4. 05. 04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수도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303 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4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성 명 : 김 홍 량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4-2 우일빌라 2/201

- 차량번호 : 인천 30바 9232

2. 공시송달기간 : 2004. 5. 5 ~ 2004. 5. 24 (20일간)

3. 참고사항

: 처분사전통지서 수령자는 2004. 5. 24일까지 남동구청 교통과

(☎ 453-2744)로 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304호

불용물품(컴퓨터)매각 재입찰(긴급)공고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불용컴퓨터 매각

품 명	취 득 가 격	수량	예정금액	컴퓨터 연 식	비 고
개인용컴퓨터	169,471,521원	145대	440,000원	1994년 ~ 1999년	본체+모니터

※ 상기수량(본체와 모니터)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파손품이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일 : 2004.05.10, 09:00 ~ 18:00

나. 입찰(개찰)일시 : 2004.05.11, 14:00

다. 입찰(개찰)장소 : 남동구청 5층 자치행정과 사무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자

5. 제출 서류 :

가. 입찰등록시

- ①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나. 입찰(개찰)시

- ①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 ③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6. 낙찰자 결정방법

-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이 2인이상 일때는 추첨에 의해 결정
- 낙찰자의 계약불이행등의 사유로 낙찰이 취소되었을 때는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7. 입찰의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불이행시 낙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나. 매각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현물인수를 완료해야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매각물품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032-453-2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30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시행규칙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선수의 초임호봉 및 봉급지급표를 현실화하고,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입상성적에 따라 형평성 있게 조정하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임용급수에 맞게 조정하여 운동경기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행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4년 5월 24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2115) 또는 FAX(453-21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개정사유

- 운동경기부의 봉급지급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을 현실화 하며,
- 성과급 및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운동경기부 운영에 내실을 기함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 봉급지급표 조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 선수의 초임호봉 확정기준 조정(안 제10조제1항)
- 성과급 지급점수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 조정
(안 제13조제4항 별표8 및 동조제5항)
-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조정(안 제14조제2항 별표9)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현황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2003)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관련 「별표1」의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수의 초임호봉은 3호봉으로 한다.”

제13조제4항관련 「별표8」의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5항중 “40점”을 “30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관련 「별표9」의 우수선수유치비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적용) 「별표9」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1]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

호 봉	감독	선수	합숙소근무자 (조리사)
1	1,201,320	854,550	467,990
2	1,222,950	874,590	488,040
3	1,244,680	894,640	508,080
4	1,266,420	914,570	527,920
5	1,287,940	934,620	547,960
6	1,311,150	956,460	569,800
7	1,334,680	977,870	591,320
8	1,357,890	999,710	613,060
9	1,381,410	1,021,240	634,790
10	1,404,620	1,043,070	656,520
11	1,429,840	1,066,390	679,730
12	1,454,520	1,089,810	702,940
13	1,479,630	1,113,020	726,470
14	1,504,740	1,136,230	749,680
15	1,529,750	1,159,760	773,100
16	1,552,960	1,181,380	
17	1,576,270	1,203,120	
18	1,599,800	1,224,530	
19	1,623,010	1,246,370	
20	1,646,430	1,268,000	
21	1,667,950		
22	1,689,680		
23	1,711,310		
24	1,732,940		
25	1,754,460		
26	1,774,610		
27	1,794,550		
28	1,814,700		
29	1,834,640		

[별표8]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 체 육 대 회	100점	60점	30점	
전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 ※ 비고 1. 기타 체육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 상	①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②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④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별표9]

우수선수유치비 지급기준

급수	유 치 비	지급액(원)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에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	<u>25,000,000</u>
2급	•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이상 입상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 신기록 수립자	15,000,000
3급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이상 입상경력자	10,000,000
4급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경력자	<u>7,000,000</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호봉확정) ①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단서신설>	제10조(호봉확정) ①----- ----- ----- ----- 다만, 선수의 초임호봉은 3호봉으로 한다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을 현실화하여 우수 선수 적극유치 등 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있는 성과금 지급점수 6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자에게는 기준점수에 미달하여도 4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 ----- ----- ----- ----- 30점----- -----	입상성적에 따른 차 등 있는 성과금 지급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 (조리사) 봉급지급표				[별표]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 (조리사) 봉급지급표				시 육상부 동일기준 (봉급지급표 현실화)
호봉	감독	선수	합숙소 근무자 (조리사)	호봉	감독	선수	합숙소 근무자 (조리사)	
1	1,138,700	810,000	443,600	1	1,201,320	854,550	467,990	
2	1,159,200	829,000	462,600	2	1,222,950	874,590	488,040	
3	1,179,800	848,000	481,600	3	1,244,680	894,640	508,080	
4	1,200,400	866,900	500,400	4	1,266,420	914,570	527,920	
5	1,220,800	885,900	519,400	5	1,287,940	934,620	547,960	
6	1,242,800	906,600	540,100	6	1,311,150	956,460	569,800	
7	1,265,100	926,900	560,500	7	1,334,680	977,870	591,320	
8	1,287,100	947,600	581,100	8	1,357,890	999,710	613,060	
9	1,309,400	968,000	601,700	9	1,381,410	1,021,240	634,790	
10	1,331,400	988,700	622,300	10	1,404,620	1,043,070	656,520	
11	1,355,300	1,010,800	644,300	11	1,429,840	1,066,390	679,730	
12	1,378,700	1,033,000	666,300	12	1,454,520	1,089,810	702,940	
13	1,402,500	1,055,000	688,600	13	1,479,630	1,113,020	726,470	
14	1,426,300	1,077,000	710,600	14	1,504,740	1,136,230	749,680	
15	1,450,000	1,099,300	732,800	15	1,529,750	1,159,760	773,100	
16	1,472,000	1,119,800		16	1,552,960	1,181,380		
17	1,494,100	1,140,400		17	1,576,270	1,203,120		
18	1,516,400	1,160,700		18	1,599,800	1,224,530		
19	1,538,400	1,181,400		19	1,623,010	1,246,370		
20	1,560,600	1,201,900		20	1,646,430	1,268,000		
21	1,581,000			21	1,667,950			
22	1,601,600			22	1,689,680			
23	1,622,100			23	1,711,310			
24	1,642,600			24	1,732,940			
25	1,663,000			25	1,754,460			
26	1,682,100			26	1,774,610			
27	1,701,000			27	1,794,550			
28	1,720,100			28	1,814,700			
29	1,739,000			29	1,834,640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8]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별표8]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입상성적에 따른 차등 있는 성과금지급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 게임	1000점	600점	400점		올림픽 게임	현	행과	같음		
세계선수 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세계선수 권대회	현	행과	같음		
아시안 게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안 게임	현	행과	같음		
아시아선 수권대회	200점	120점	80점		아시아선 수권대회	현	행과	같음		
전국체육 대회	100점	60점	40점		전국체육 대회	현행과	같음	30점		
전국규모 대회	50점× 배분비 율	30점× 배분비 율	20점× 배분비 율		전국규모 대회	15점	10점	6점		
※비고 1. 기타 체육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 배분비율은 다음 과 같다.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전국규모대회는 다음과 같다.					전국규모 대회 추가 산입
구분	비율	해당전국규모대회명칭			구분	삭제	해당전국규모대회명칭			
육상	35%	①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③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 대회			육상	삭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별표]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임용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게 조정
급수	유치비	지급액(원)	급수	유치비	지급액(원)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대표선수로서 국제 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u>20,000,000</u>	1급	(현행과 같음)	<u>25,000,000</u>	
2급	•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이상 입상 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신기록 수립자	15,000,000	2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급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이상 입상 경력자	10,000,000	3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급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경력자	<u>5,000,000</u>	4급	(현행과 같음)	<u>7,000,000</u>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308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04년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남동구 남동공단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라. 공사개요

- 가로등 보수 : 364개소
- 불량선로(굴착)교체 : 7,191m
- 제어함 보수 : 7(5)개 (부하분리용 신설)

마. 설계금액 : 292,518,000원(추정가격 246,370,000 부가세 24,637,000

한전수탁비 391,000 관급21,120,000원 포함)

※ 기초금액 : 271,007,000원(추정가격 246,370,000 부가세 24,637,000)

2. 입찰서 제출 및 대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5월 10일(월)오전09:00 ~ 2004년 5월13일(목)오후14: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5월13일(목) 16: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열람일시 및 장소 : 2004년5월 7일(금)~2004년5월13일(목) [건설과]

라. 현장설명 : 생략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 있는 G2B(국가종합전자조
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 제출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2004.2.6)
제2조제1항7호(추정가격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10점) 및 경영상태평가(10점)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02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194.70%, 유동비율 120.33%

7. 낙찰자 통보 : 적격심사 후 즉시 통보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설계금액중 관급액등을 제외한 기초금액(271,007,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
격」으로 결정

다.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할수 있음과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년 5월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리관